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4. 25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4. 12. 강남구청장(세무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4. 25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정찬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한 용어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(안 제2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지방세징수법」

제9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-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4. 2. 23. ~ 2024. 3. 14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3) 기획예산과(규제심사) : 해당사항없음
 - 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원안동의
 - 5) 가족정책과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본 안건은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임.
- 2022. 1. 28. 시행된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 - 개정 전의 규정은 ‘결손처분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‘정리보류’라는 용어로 변경한 바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,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.
-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

됨. 다만, 다른 자치단체 등은 2022년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바 제 때에 반영하려는 관심이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“결손처분”을 “정리보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2항제1호, 제4항제2호에 따른 “특별한 공적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<u>결손처분</u> 자료의 제공</p> <p>다. ~ 자. (생략)</p> <p>⑥ · ⑦ (생략)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<u>정리보류</u> ----- --</p> <p>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· ⑦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1항의 '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'에 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이제철(02-3423-5602)